

제천시 헌혈 권장 조례안 설사 보고서

1. 심사결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0. 11. 17. 이정임 의원회 5인
나. 회부일자 : 2010. 11. 19.
다. 상정일자 : 2010. 11. 23. (제177회 제2차 정기회 지체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김꽃잎 부위원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혈액관리법」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혈액증장활동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나. 주요내용

- “현혈권장활동”과 “현혈자원봉사활동”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(안 제2조)
 - 시장의 현혈권장활동 책무를 규정함 (안 제3조)
 - 현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,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, 제5조)
 - 현혈자원봉사활동단체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 근거를 둠(안 제6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홍완식)

- 본 조례안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협력기관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협력 자원봉사 활동 등을 지원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.

○ 주요내용을 보면

현혈권장사업 계획 수립·시행,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의 현혈권장활동의 책무를 이행토록 하였으며, 현혈자원봉사활동 추진단체에 대한 경비지원과 포상근거를 두어 시민의 자발적인 현혈활동을 유도 및 권장하고 있음.

-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혈액 인구는, 2007년 208만명, 2008년 237만명, 2009년 257만명으로 국민혈액율이 5%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며, 혈액보유현황(10.11.17현재)도 농축적혈구 8일분, 농축혈소판 1.8일분으로 적정한 혈액수급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혈액

참여 확대가 요청되는 상황임.

- 헌혈 권장조례는 40여개의 광역 및 기초 단체에서 제정 시행중이며 우리시에서도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, 시민들의 헌혈참여 확대를 위해서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(답변자 : 김꽃임 부위원장, 보건위생과장)

- 질의) 헌혈을 많이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럼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 쪽으로의 자원봉사자와 그다음 각 학교와 그다음 시민들에게 홍보를 더 적극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과장님은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조덕희 위원)
- 답변) 조례안이 확정되고 하면 제천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또 봉사자들은 어떤 활동비라던가 이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럴 때 예산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보건위생과장)
- 기타의견) 지금 현재는 적십자사 도와 시에서도 적십자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. 조례가 확정이 되게 되면 이제는 보건소에서 정말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런 쪽에서 홍보를 더 많이 시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권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조덕희 위원)

5. 소수의견

“없 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 가결”

8. 심사보고 불임서류

- 제천시 헌혈 권장 조례안 1부. 끝.